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2243호
2. 발 의 자 : 김인제 의원 등 18명
3. 발의일자 : 2024년 10월 16일
4. 회부일자 : 2024년 10월 18일

II. 제안이유

- 서울시는 개별산업 및 경제민주화·공정경제·사회적경제 등에 대한 지원 근거 조례가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및 지역경제 현안을 협의하는 지역경제협의회 관련 조례가 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 기업지원기관, 대기업 및 중소기업 등의 지역경제 주체 간의 협력 및 소통 촉진, 서울 경제에 대한 중장기적 미래 계획 제시 등을 위한 기능이 미비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지역경제 주체간 협력 및 서울 경제의 중장기적 미래계획을 심의·자문하는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서울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Ⅲ. 주요내용

- 가. 혁신경제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함(안 제2조).
- 나. 혁신경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의안의 제출, 안건의 배부 등을 규정함(안 제7조·제8조).

Ⅳ. 참고사항

-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V.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이준석)

1. 조례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서울시의 중장기 경제계획,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을 심의·자문하는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발의됨.

2. 조례안의 입법 배경

- 현재 우리나라는 저성장·저고용의 심화 및 저출생·고령화 등에 따른 국내경제의 성장잠재력 둔화와 3고(고물가, 고환율, 고금리)로 대변되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획일적이고 일방적인 경제정책으로는 그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임.
- 특히 경제불황의 장기화로 인해 서울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은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타개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
- 이에 동 조례안은 서울시, 기업지원기관, 대기업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지역경제 주체가 참여하여 서울 경제정책 및 중장기 계획 등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를 구성·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경제정책 마련과 서울경제의 위기 극복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하겠음.

3. 조례안의 세부 내용

가. 조례안의 체계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됨.

< 조례안의 구성 >

제1조	목적	제6조	간사
제2조	기능	제7조	의안의 제출
제3조	구성 및 운영	제8조	안건의 배부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제9조	의견의 청취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	수당 등

- 동 조례안은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등에서 제시하는 조문 간 구성과 체계,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필수규정 등을 전반적으로 준수하고 있어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나. 혁신경제위원회의 기능(안 제2조)

- 안 제2조는 ‘서울특별시 혁신경제위원회’의 기능으로 ▶시가 수립하는 중장기 경제계획, ▶지역경제 관련 시·기업지원 관련 공공기관·대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유관기관 간 협의 조정,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을 심의·자문 하도록 규정함.

- 이는 서울경제에 대한 중장기적 미래계획 제시 및 지역경제 주체 간의 협력과 소통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위원회의 목적 달성에 필수적인 기능을 명확히 제시한 것임.
-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경기침체 등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고, 국내경제도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로 인한 수출감소, 소비위축, 금리상승 등의 경제위기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지역경제 주체 간의 소통과 협력을 통한 서울경제의 활성화를 목표로 하는 위원회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 다만 현재 서울시에는 시의성과 필요성에 따라 순차적으로 경제 분야 조례들이 제정되었으나, 이로 인해 경제 분야 조례와 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이 과다하므로 향후 입법 체계성 확보를 위해 조례 간 기능과 위계에 대한 조정이 요구됨.¹⁾

다. 혁신경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 ~ 안 제10조)

- 안 제3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인 경제실장과 민생노동국장 외에 위촉직 위원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기업지원 관련 공공기관·대기업·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의 대표와 부대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대표와 부대표 등을 포함해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경제실장이 됨(안 제3조).

1) 현재 서울시 경제분야 관련 조례는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경제위기대응시스템 구축·운영 등에 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 등이 있음.

- 또한 위원회는 비상설로 운영되며 위원은 회의 종료 시 해촉되는바(안 제3조), 이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2)의 ‘위원회 신설 시 비상설 원칙’을 충족하고 있음.
- 그리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
- 이 밖에 동 조례안은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4조), 위원장의 직무(안 제5조), 간사(안 제6조), 의안의 제출·배부(안 제7조·8조), 의견의 청취(안 제9조), 수당(안 제10조) 등 위원회 운영의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함.
- 이와 같이 경제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불황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중장기 계획 등의 논의를 위해 서울의 경제정책을 책임지는 경제실장과 기업가, 소상공인 등의 지역경제 주체가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입법조사관	연락처
신현두	2180-8055

2) 제6조(위원회의 설치요건)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비상설(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된 후 자동 해산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7.24.>

1. 법령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방법 등이 다르게 명시된 경우
2. 위원회의 회의가 분기별 1회 또는 연간 4회 이상 개최할 것이 예상되어 회의 개최 시마다 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3. 안건 발생 후 위원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